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부칙 | 부칙 |
| ①(생략) ②(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. | ①(현행과같음) ②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당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당해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|

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'95 6. 8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5. 6. 1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'95. 6. 1.
- 다. 상정일자 : 제30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('95. 6. 8.)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춘기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”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“15인”에서 “20인”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”로 명칭을 변경함.(제명 및 안 제1조)
- 협의회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

이내로 확대함(안 제3조제1항)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 동개정조례(안)은 변화와 개혁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국제화를 세계화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김유현 위원) :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점이 무엇인가?
- 답변요지(이춘기 총무과장) : 내용상 별차이가 없으나 현재 “세계화”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0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5년 6월 1일
제 출 자 : 마 포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”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“15인”에서 “20인”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마포구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개정골자

-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”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1조)
- 협의회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함(안제3조제1항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5. 1. 5. 법률 제4877호) 제15호
- 지방자치법시행령(1994. 12. 31. 대통령령 제14483호)제42호
-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(1995. 5. 6. 조례 제3189호)제1조, 제2조및제3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필요성 :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
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국제화”를 “세계화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국제화의”를 “세계화의”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”로 각각 한다.

제2조제2호, 제5호및제6호중 “국제화”를 “세계화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15인이내의”를 “20인이내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「페이지」에 계속)

